

녹색성장 촉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

환경전문서비스업 등록 및 관리 추진 계획

2024. 2.



【환경안전과】

요 지

환경전문서비스업 등록 및 관리 추진 계획

- ❖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·시공 업체의 등록 및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관리를 효율화 하고자 함

□ 추진근거
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, 제16조의4, 제28조
-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28조
- 「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, 제6조

□ 환경전문서비스업 현황

(2024. 2. 기준)

구 분	측정대행업	환경전문공사업 등			
		총 개소	계	환경전문공사업	관리대행기관
144	27	117	70	28	19

□ 2024년 추진계획

- 환경전문서비스업 신규 및 변경등록 민원처리(연중)
- 환경전문서비스업 정기 점검

구 분	계	현장 점검 실시 대상 (2024. 9.~11.)		자가 점검 실시 대상 (2024. 9.)
		측정대행업	측정대행업 외 복수업종 등록 업체	환경전문공사업 등 단일업종
개소	116	27	14	75
점검반 편성		3~4인/1조 (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)	2인/1조 (시 환경안전과)	

- 환경전문서비스업 수시 점검
 - 일 정: 2024. 1.~12. (연중)
 - 대 상: 측정대행업 외 단일업종 등록 업체 (자가점검 실시 대상)

환경전문서비스업 등록 및 관리 추진 계획

- ❖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·시공 업체의 등록 및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관리를 효율화 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, 제16조의4, 제28조
-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28조
- 「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, 제6조

II 환경전문서비스업 현황

(2024. 2. 기준)

구 분 총 개소	측정 대행업	환경전문공사업 등			
		계	환경전문공사업	관리대행기관	환경컨설팅회사
144	27	117	70	28	19

III 2023년 추진실적

□ 환경전문서비스업 관련 민원처리

- 민원처리 315건(신규 14건, 변경 292건, 폐업 9건)

구 분	총 계	측정대행업	환경전문공사업	관리대행기관	환경컨설팅회사
총 계	315	177	63	62	13
신 규	14	3	3	4	4
변 경	292	174	54	56	8
폐 업	9	-	6	2	1

□ 환경전문서비스업 지도·점검

- 목 적: 환경전문서비스업 사후 관리
- 대 상: 환경전문서비스업 110개소

구분	총 개소	현장점검			자가점검*	비고
		계	측정대행업	복수업종 (측정대행업 외)	단일업종	
대상	110	33	20	13	77	

○ 점검 반

- 측정대행업: 3~4인/1조(시 환경안전과,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)
- 측정대행업 외 복수업종, 단일업종: 2인/1조(시 환경안전과)
- *기타 단일업종 업체는 자가점검표 제출로 지도점검 같음

○ 점검내용: 등록기준 준수 여부, 변경사항 여부, 최근 1~2년 이내 실적 유무 등

○ 점검결과: 108개소 점검(2개소 폐업)

- 측정대행업 1개소 과태료 부과, 그 외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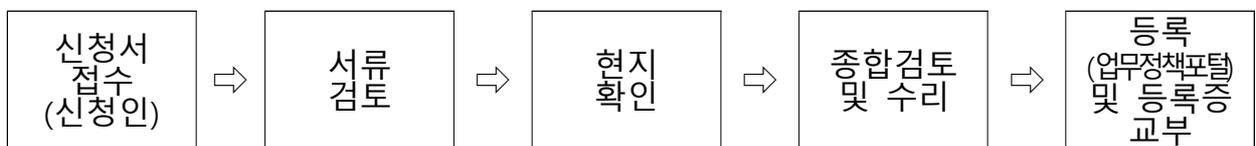
IV 2024년 추진계획

□ 환경전문서비스업 관련 민원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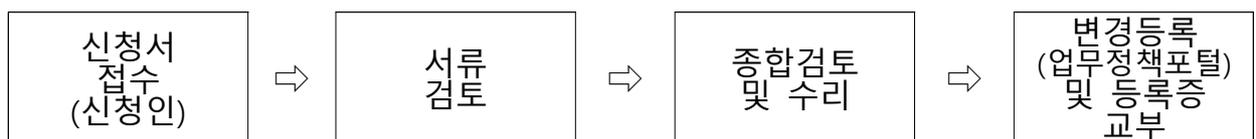
○ 기 간: 연중

-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법정 처리기한 내 1~2일 단축 처리

○ 신규등록 민원처리 절차



○ 변경등록 민원처리 절차



□ 환경전문서비스업 지도·점검[총괄]

○ 점검방향

- 환경전문서비스업 전체 지도·점검
- 적발 위주의 과도한 점검 지양
- 행정처분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
- 경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제도 위주로 점검

○ 점검내용

-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
- 실험일지, 측정기록부 등 적정 기록 및 보존여부 확인
- 정도관리 및 검·교정 이행 여부
- 공정시험법 준수 여부
- 대표자(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) 결격사유 여부
- 업무 실적의 허위 및 변경등록 미이행 여부
- 기타 점검사항에 따른 관리 실태 등

□ 환경전문서비스업 점검[정기]

○ 현장점검

구 분	내 용				비고	
일 정	- 2024. 9.~11. (업무 일정 및 여건에 따라 점검 실시) -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지도·점검 1개월전 사전예고					
대 상	구 분		계	측정대행업 등록 업체	측정대행업 외 복수업종 등록 업체	
	총 개소		41	27	14	
점검반 편성	- 측정대행업: 3~4인/1조 (시 환경안전과,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) - 측정대행업 외 복수업종 등록 업체: 2인/1조 (시 환경안전과)					

○ 자가점검

구 분	내 용	비고
일 정	- 2024. 9.	
대 상	- 측정대행업 외 단일업종 등록 업체 (75개소)	
목 적	- 자가점검표를 작성·관리토록 하여 자발적 법규 준수 유도	
방 법	- 업체측 공문 발송 및 이메일 활용 자가 점검표 접수 - 제출된 자가 점검표를 통한 대상 업체 문제점 검토 - 신규등록 업체 현지 확인 시 주변 등록업체 방문 점검(필요시)	

□ 환경전문서비스업 점검[수시]

- 일 정: 연중
- 대 상: 자가점검 업체 및 민원 발생 업체, 영업정지 행정처분 업체
- 목 적: 업체의 자발적 환경관련 법규 준수 유도
- 방 법: 신규등록 업체 현지 확인 시 주변 등록업체 방문 점검 등
- 점 검 반: 2인/1조 (시 환경안전과)

□ 환경전문서비스업 점검 결과 조치

- 위반사항 적발 시, 관계인 입회하에 6차 원칙에 따라 위반확인서 징구
- 관련법규 위반사항 중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
- 관련법규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
- 영업정지 행정처분 업소 대상 이행실태 확인차 수시점검
-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토록 현장지도 및 추후 재방문 점검

V

기대효과

- 환경 관리와 관련된 자발적 법규 준수 및 사전예방 강화
- 기술능력, 시설장비, 영업행위 등에 대한 중점 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문제 발생 최소화

VI

행정사항

-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 지도·점검 1개월 전 사전예고
- 측정대행업 지도점검 시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점검 실시
- 환경전문서비스업체 등록 및 관리 추진 계획 인천시 홈페이지 게시